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(행정안전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병무청 소속기관인 경인지방병무청에 제2병역판정검사장의 운영과 관련하여, 임상병리검사 및 심리검사 등 병역판정검사·입영판정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2명(6급 3명, 7급 4명, 8급 3명, 9급 2명)을 증원하고 병역판정검사 중 참복결핵 검진 실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(8급 1명)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병무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. 31. ~ 2.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중 총계 “1,625”를 “1,637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,625”를 “1,637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1,614”를 “1,626”으로 한다.

별표 6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제30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6년 2월 28일)

총계	10
일반직 계	10
8급 이하	10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4]

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27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,625</u>	<u>1,637</u>	+12
일반직 계	<u>1,625</u>	<u>1,637</u>	+12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1,614</u>	<u>1,626</u>	+12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85